

##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677

제출년월일 2001. 1.

제출자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정부의 역점 시책인 행정규제 개혁과 행정규제 사무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 
코자 제안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중 책임한계 조정
- 소화용 급수의 사용에서 1회에 10분인 것을 20분으로 조정
- 권리 의무승계 중 불필요한 부분삭제

### 3. 근거법령 : 불임

- 불임 : 1.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제22조 제2항중 “10분”을 “20분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권리의무의 승계)”를 “(권리의무)”로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 ①(생략)            ②(생략)            ③(생략)  <u>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을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u>            ⑤(생략)</p> <p>제22조(소화용 급수의 사용) ①(생략)           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·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<u>10분</u>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제24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(생략)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</p>	<p>제18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(현행과 같음)  <u>④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을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⑤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소화용 급수의 사용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 20분 -----            ---</p> <p>제24조(권리의무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(삭 제)</p>

## 근 거 법령 발췌

### □ 관계법규

#### ○ 제천시수도급수조례

제18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

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,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, 상장유가증권,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여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2조(소화용 급수의 사용)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 통합한다.

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·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24조(권리의무의 승계)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



궁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○	기관의 장
선	
답	0 / 21 60



제314호 2000. 11. 3(금)

## 【입법예고】

- 제천시공고제2000-559호(제천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) ..... 2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66호(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) ..... 7

## 【고 시】

- 제천시고시제2000-89호(하천(로지) 점용허가사항고시) ..... 9

## 【공 고】

- 제천시공고제2000-556호(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) ..... 10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57호(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) ..... 11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58호(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) ..... 12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62호(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) ..... 13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63호(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) ..... 14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64호(도로점용(굴착)변경허가에관한공고) ..... 15  
 ○ 제천시공고제2000-567호(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) ..... 16

회	2000. 11. 3	10	주	2000. 11. 3	11	12	13	14	15	16
●	2000. 11. 3	10	/	주	2000. 11. 3	11	12	13	14	15

발행 : 제천시 / 편집 : 공보담당관실(☎ 840-8052, 우 390-701,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-2번지)  
 제천시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되며, 원고와 납은 매주 수요일까지입니다.